

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	보 도 자 료	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~26 부산
2019년 11월 1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7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
배포일시	2019. 11. 15.(금)	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
담당과장	정해권 과장(043-870-5520) 공수진 과장(043-719-1551)	담 당 자 기현종 연구관(043-870-5523) 강진욱 연구관(043-719-1594)

中 사이버보안·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- '19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, 7개국 15건의 규제애로 해소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'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위원회 (11.11.~15.)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.

*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, 표준,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

-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,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,
- 그 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,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전(STC*)으로 제기하였다.

* STC(Specific Trade Concerns) :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,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,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

* 중국(4개) : ①네트워크안전법, ②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, ③의약품·의료기기 등록비기준, ④화장품 감독관리조례(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규정 포함)
 인도(1개) : 에어컨 규제, EU(1개) : 의료기기 규정
 사우디·에콰도르(각 1개) : 건조기 에너지효율

□ WTO TBT 위원회가 폐막된 11월 15일 현재, 대표단은 중국·중동·중·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졌다.

①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.

-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①IT제품/서비스의 보안심사와 ②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하여,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였다.
- 또한, 그간 ③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에 의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중동·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.

- 아랍에미리트는 ④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(GSO)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기로 하였고, ⑤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하였다.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GSO 7개 회원국은 도입예정인 ⑥유해물질제한(RoHS), ⑦건설장비 관련 규제를 시행 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,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.
- 인도는 ⑧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여,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하였다.

③ 중·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, 현지 시험·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하여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내었다.

- 브라질 유해물질제한(RoHS) 규제는 ⑨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하였고,

⑩ 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특수분야인 건설장비는 제외하기로 하였다. 아울러, ⑪ 해외공인시험소 및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하여 기업의 인증기간·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.

- 페루는 ⑫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여 사후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하였고,

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⑬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주력 세탁기(통돌이)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하였다.

- 파나마도 시행예정인 ⑭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'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, ⑮ 적용기준일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,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.

□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,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,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- 우선, 12월 중 수출기업, 업종별 협단체,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
-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/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.

【붙임】 제3차 WTO TBT 위원회('19.11월) 주요 성과(7개국 15건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기현중 연구관(☎ 043-870-5523),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 강진욱 연구관(☎ 043-719-15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WTO TBT 위원회('19.11월) 계기, 협의 성과(7개국 15건)

□ 규제개선(10건)/시행유예(5건) 등 총 15건

국가	규제명	요구사항(현황)	협의결과(기대효과)
1. 중국 (3건)	네트워크안전법	①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/서비스의 보안심사시 핵심기술자료 방지 요청 - 보안심사과정에서 기업정보 유출 우려	(규제개선) 보안심사과정에서 기업에 소스 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⇒ 기업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
	암호기술법	② 상업용 암호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시 기업 기밀 유출 방지 요청 - 시험인증과정에서 기업정보 유출 우려	(규제개선) 시험인증과정에서 기업에 소스 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⇒ 기업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
	화장품 허가 및 등록검사업무규정	③ 제한된 중국 검사기관 운영으로 화장품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충분한 검사기관 확대 요청	(규제개선) 제도 개선(지정-등록)으로 검사기관 수 확대 ⇒ 화장품 검사·등록 소요시간 단축 기대
2. UAE (2건)	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	④ GSO국가에 비해 과도한 에어컨 최소 에너지효율기준(MEPS) 완화 요청 ⑤ 최소에너지효율기준(MEPS)에서 누락된 구간 보완 요청	(규제개선) GSO국가 수준으로 완화 ⇒ 수출장애요인 해소 (규제개선) 누락된 구간을 보완하기로 함 ⇒ 규정적용의 불확실성 제거
	RoHS (유해물질사용제한)	⑥ 전기전자제품분야 RoHS 시행시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요청	(시행유예)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 기간 부여 예정('20년 하반기 시행예정) ⇒ 규제 시행시 준비기간 확보
3. GSO (2건)	기계장치, 안전부품 및 리프트 장비 규제	⑦ 규제시행시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요청	(시행유예)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 기간 부여 예정('20년 하반기 시행예정) ⇒ 규제 시행시 준비기간 확보
	통신규정	⑧ IT통신기기 규제 시행시기 유예 요청 - 현지 지정 시험소부재	(시행유예) 당초 시행일('19.8월)을 충분한 시험인프라가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함 ⇒ 인증 대응기간 확보
5. 브라질 (3건)	RoHS (유해물질사용제한)	⑨ TBT 통보절차 준수 및 시행시기 연기 요청 - WTO 회원국 의견 제기 기회 상실 ⑩ 비도로용 건설장비용 차량은 적용 배제 요청 - 특수분야의 인증부담 과중	(시행유예) WTO TBT 공식통보 절차를 거쳐 당초 시기('20.1월)를 연기하기로 함 ⇒ 의견 제기 기회 및 인증 대응기간 확보 (규제개선) 적용제외하기로 함 ⇒ 건설장비 차량의 인증부담 해소
		⑪ 해외시험성적서 및 제조자 시험성적서 인정 요청	(규제개선) 국제공인시험소 및 제조자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함 ⇒ 기업의 인증기간절차 간소화 및 비용 경감
	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	⑫ 소비전력 표기시 제조자의 유연성 허용 요청 - 소비전력 시험결과 기재는 사후검사시 소비전력 미충족 우려 ⑬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(통돌이)에 온도 조건 시험항목 요구 규정 삭제 요청	(규제개선) 라벨 내 소비전력 표기시 오차를 감안한 제조자 선언값을 허용함 ⇒ 사후검사시 결과의 불확실성 제거 (규제개선) 제품특성에 맞게 시험항목을 개정하기로 함 ⇒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수출장애 요인 제거
6. 페루 (2건)	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	⑭ 시행시기 유예 요청 - 현지 시험인프라 부재	(시행유예) 당초 시행일('19.7월)을 '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함 ⇒ 인증취득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
	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	⑮ 시행일(통관일 판매일) 기준을 통관일로 요청	(규제개선) 통관일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함 ⇒ 통관된 재고제품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